



## 보도자료

▶ 산재보험혁신팀 권영순 팀장  
박명순 사무관

- ▶ 2006. 12. 28. 배포
- ▶ 총 4 쪽 (사진없음)

TEL : 503-9761~2  
E-MAIL : pms540@hanmail.net  
FAX : 507-373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### 산재환자 대형 전문병원에서도 치료 받을 수 있다

- '08년부터 서울대병원,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 
노동부,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

- '08년부터 산재환자도 서울대병원,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노동부는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·사·정이 합의한 「산재보험제도개선안」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.
-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'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」가 도입된다.
  - 「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」는 서울대병원, 연세대 세브란스병원, 삼성서울병원, 가톨릭강남성모병원, 서울중앙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별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다.
  - 현재는 의료기관이 산재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면 근로복지

공단이 이를 지정하는 「신청지정제」 이어서 당해 의료기관이 산재환자 진료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산재환자가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를 받을 수 없다.

-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종합병원,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「신청지정제」가 유지된다.
- 또한, 보험설계사, 골프장경기보조원, 학습지방문교사, 레미콘차량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.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/2씩 부담하되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.
-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되고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단위 연간 변동폭이 30% 이내로 제한된다. 현재는 제한이 없다.
- 이번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과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여 '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## 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】

### ① 산재근로자의 요양·재활서비스 확충을 위해

- 산재근로자만이 신청토록 되어있는 요양신청제도는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
  - 산재요양 승인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요양 결정 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간에 사후 정산하며
  -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 한도로 대부해주는 제도가 도입 된다.
- 산재보험법상 진찰·약제·처치·간병·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되고
  -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보험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되게 되어 의료재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.
-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가 도입된다.
  -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산재장해자에게는 최장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훈련수당과 훈련비용이 지원된다.

### ② 산재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

-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수준의 1/2미만인 저소득 근로자는 70%에서 90%로 20% 인상되고
  - 65세 이상자에 대해 5%p 감액지급 하던 고령자 휴업급여는 재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%p씩 지급률이 하향 조정되고 65세 이후에는 50%가 지급된다.
-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.8배 최저보상기준은 1/2수준으로 규정된다.
-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,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(현 60세)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규정된다.

③ 보험급여의 이의제기에 대한 산재 심사·재심사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

-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되고 60인의 위원중 2/5는 노사단체에서 추천토록 하였다.

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

- 보험설계사, 골프장경기보조원, 학습지방문교사, 레미콘차량 운전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하되,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.
  -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 1/2씩 부담하되, 골프장경기보조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.
- 기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추가적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
**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】**

- 산재보험료를 결정할 위한 보험급여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이 9월30일에서 6월30일로 변경된다.
  -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축소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최고한도가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.
  -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재보험료율의 연간 변동폭이 30% 이내로 제한된다.